

# 행정자치부 시정요구

제 목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 누락

기 관 명 경기도

관 계 기 관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 오산시, 양주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연천군

내 용

수원시 등 18개 시·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르면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하는 때에는 검인된 계약서·등기필통지서 등 관계서류를 조사하는 등 등기신청해태사실의 여부를 조사·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일명 RTMS이라 함, Real-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sup>33)</sup>상의 등기해태과태료 대상관리목록을 부동산 등기 신청일 기준으로 2011. 7. 1.부터 2016. 3. 31.까지 감사대상기관에서 확인하도록 한 결과, 수원시 등 18개 시·군에서는 별표와 같이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987건 355백만원의 부과를 누락하였다.

33) 국토교통부에서 2006년부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구축·운영

[표]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 누락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과태료		구 분	과태료	
	누락건수	금 액		누락건수	금액
18개 구·군	987	355,489	오산시	7	2,748
수원시	8	93,014	양주시	16	17,096
고양시	51	7,817	안성시	12	1,492
성남시	7	3,699	포천시	120	17,783
용인시	10	5,848	의왕시	11	7,852
부천시	2	156	하남시	27	19,937
안산시	5	1,159	여주시	86	9,459
화성시	109	90,798	양평군	286	25,707
김포시	78	25,851	연천군	83	11,684
광주시	69	13,389			

※ 자료 :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수원시장, 고양시장, 성남시장, 용인시장, 부천시장, 안산시장, 화성시장, 김포시장, 광주시장, 오산시장, 양주시장, 안성시장, 포천시장, 의왕시장, 하남시장, 여주시장, 양평군수, 연천군수는

앞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상의 등기해태 과태료 대상 관리목록을 기초로 검인된 계약서·등기필통지서 등 관계서류를 조사하여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누락 분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